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칙

제39대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

2025년 10월 1일 개정

## 1장 총 칙

1조 (명칭) 본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Bio-Tech SA)라 한다.

1. 본회의 명칭은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약칭 성대 생공대 학생회)라 한다.
2. 본회의 영문 표기는 “Student Association of Bio-Technology Dep. Sungkyunkwan UNIV. (약칭 SKKU Bio-Tech SA)”라 한다.
3. 본회의 명칭은 한글 표기는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학생회”를 쓰고 영문 표기는 “SKKU Bio-Tech SA”를 쓰되 상황에 따라 위의 내용 중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생명공학대학 학우들의 학생자치에 그 목적의 근본을 둔다.

1.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다.
2. 본회는 학우 복지 및 학문 탐구, 학우 문화 활동 등 학우 전반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3. 본회는 학우들의 의견수렴 및 의견의 표출을 위하여도록 한다.

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내에 두도록 한다.

4조 (구성) 본회는 업무의 분담 및 개별 자치활동을 위하여 산하기관을 둔다.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를 둔다.(약칭 : 생학총회)
2.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를 둔다.(약칭 : 생학대회)
3. 본회의 강성 의결기관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를 둔다.(약칭 : 생학운위, 학운위, 생운위)
4. 본회 산하에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국을 구성하도록 한다.
5. 본회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투표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6. 본회 내의 자치기구로 전공별 과 학생회를 두어 전공별 과 학생회 활동을 보장한다. 전공별 과 학생회는 전공학생회의 회칙을 존중하며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에는 생명공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및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7. 본회 산하 단과대 동아리를 두어 학우들의 문화 활동을 돋도록 한다. 단과대 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는 생명공학대학 단과대동아리회칙을 따라야 하며 이외의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아리 회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별 과 동아리는 각 과 학생회에서 관리한다.)
8.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 산하의 특별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5조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생명공학대학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고 정회원은 생명공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1. 본회의 정회원자격은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등록하고 생명공학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우들로 한다.
2. 본회의 준회원 자격은 자연과학계열 학생, 생명공학대학 학생 중 미등록상태인 학생, 복수전공으로 생명공학대학을 택한 학생, 생명공학대학의 전공학문을 4학기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3.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한 제반 사항의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행

사할 수 있다.

- 투표권
- 피선거권
- 전체 학생 총회의결권

4.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자체를 부인하거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6.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한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진다.
7.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해 보고받을 권리, 본 회 모든 회의에 참석,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8. 본 회의 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9. 본 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
10. 정회원 중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생명공학대학 학생회나 단과대학 동아리, 또는 생명공학대학 전공학생회 소유 자산 또는 사업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자, 배임 또는 횡령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투표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11. 5조 10항의 심각한 재정손실의 기준은, 직전 해 생명공학대학 1학기 학생회비 배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금액의 50%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한다.
12. 생명공학대학 사업 또는 생명공학대학전공학생회 사업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자'의 정의는 최초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정회원이 된 이후, 단과대/학생회 사업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해당한다.
13.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의 경우, 누구나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학생총투표나 학생총회를 통해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
14. 5조 12항과 5조 13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공학대학 학생운영위원회에 해당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자료 등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학생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2/3 참석 과반수찬성으로 피선거권 재부여에 관해 의결할 수 있으며, 소명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고 학생운영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5. 배임과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6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의견을 원활한 수렴과 표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기구 및 특별기구를 둔다.

1.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를 둔다.
2. 본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 투표를 둔다.
3. 본회는 최고 대의 의결기관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생학대회)를 둔다.
4. 본회는 항시 대의 의결기관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를 둔다.
5. 본회는 집행기구로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을 두고 학생회 내 자치기구로써 식품생명공학 전공학생회,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전공학생회, 융합생명공학 전공학생회를 둔다.

6. 각 의결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특별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는 실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별 실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자치기구 산하에 동아리 및 학회를 둘 수 있다. 단, 동아리 및 학회의 경우 학부 동아리 회칙과 각 동아리 및 학회 회칙을 존중한다.

7조 (학교 운영 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중요 사항
2. 학생권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항
3. 생명공학대학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항. 단, 이 경우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 또는 학생 총 투표 또는 학생 대표자회의를 거쳐야 한다.
5.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외부 단체와의 연대활동, 가입, 또는 활동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 또는 학생 총 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지키지 않았을 시, 이는 학우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재적 행위로 간주하여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30일 내에 탄핵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외부 단체의 정의는 성균관대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로 한다.(예:정당, 자유대학생연합, 뉴라이트, 한국대학생연합, 기타 정당 산하 단체, 정당 유관 단체 등)

## 2장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

8조 (위상)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9조 (구성)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10조 (의장)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의 의장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이 하도록 한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시에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이 의장이 될 수 없다.
3.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의 부재 시, 또는 탄핵안 발의 시에는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에서 인선한 일인이 하도록 한다.

11조 (업무 및 권한)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의 탄핵 심의 및 의결
2. 학생 발의 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3. 학생 총투표 결과에 대한 무효결정
4. 기타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 및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12조 (소집 및 개회)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 개회한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정회원의 1/10 이상의 서면 발의 또는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1/2의 서면 발의 또는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서면 발의 시 학생들의 각 과별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회의 소집 일주일 전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의결로 즉시 소집할 수 있다.
3.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정회원의 1/4 이상의 참여로 개회 및 의견 논의 할 수 있고, 참석자 중 과반수 의결을 통해 안건을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4.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10일 이내에 회의를 재소집한다.
5. 재소집 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 안건은 자동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로 위임된다.
6. 매 안건 의결 시마다 총 참여 인원 정족수를 점검해야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의결을 할 수 없고 해당 안건 의결을 위해 다시 정족수를 채워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7. 정족수가 부족함이 발견된 후 30분 이내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학생총회는 그 자리에서 종료되며, 그전까지 의결한 안건만이 유효하다.
8. 개회 후 1시간 이내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학생총회는 자동 폐회된다.

13조 (안건의 의결)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정회원의 1/4 이상 참석하여 참석자 과반수 의결을 통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14조 (안건의 위임)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회의로 안건을 위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는 동일 안건에 2번의 회의 개최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로 위임된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에서 안건의 의결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회의로 안건 위임할 수 있다.

### 3장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 투표

#### 15조 (지위)

1. 학생 총 투표는 본 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방식이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 투표에서 통과된 안건은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에서 통과된 것과 같은 위상을 가진다.

#### 16조 (권한)

1. 학생 총 투표는 본 회의 존립 및 본 회의 활동과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17조 (구성)

1. 학생 총 투표는 본 회의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18조 (회의 및 운영)

1. 학생 총 투표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 총 투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의 심의

(제37조 3항의 경우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 실시한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의 대표자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의 의결

3. 생명공학대학생회장의 요구

4. 생명공학대학 정회원 1/5 이상의 서면 발의.

② 생명공학대학생회장은 학생 총 투표 시작일 7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고 학생 총 투표 실시를 공고한다. (단, 학생회장 결위 시, 부회장이 공고하며, 부회장도 결위 시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투표 공고자는 제 23조 3항의 의장이 맡는다. 생명공학대학 비상대책 위원장일 경우 생명공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다.)

③ 학생 총 투표는 별의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표 5일 이전에 총 투표 실시와 투표 안건을 공고할 수 있다.

④ 학생 총 투표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투표에 의한다.

⑤ 학생 총 투표는 직전년도 생명공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그 시행 방법을 따른다.

## 19조 (의결)

학생 총 투표의 안건은 전체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 20조 (관리)

1. 학생 총 투표는 생명공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투표는 선거시행세칙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한다.

3.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 투표에서 과반수의 참여가 없었을 경우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2/3 이상의 참여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 의결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정회원 1/5의 반대가 있을 시 자동 폐기되며 추후 학부 운영위원회와 학부 학생 대표자 회의에 안건 재상정될 수 없다.

4.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 투표에서 의결된 사항의 폐기는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에서 폐기함을 안건상정하여 의결 또는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폐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로 안건을 재상정 할 수 없다.

## 4장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21조 (지위)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최고의 대의 의결기관이며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의 위임기구임과 동시에 심의·의결기관이다.

22조 (대의원구성)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생명공학대학 내 직선간부로 구성하도록 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생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 ①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② 생명공학대학 내 전공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③ 생명공학대학 내 전공별 1~2학년대표·3~4학년대표
2. 생학대회 대의원은 소속 기구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3.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 22조의2 (대의원의 출결)

- 1. 대의원이 생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
  - ① 위임자 및 수임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 ② 위임자의 위임 사유
  - ③ 위임장 제출 일시 및 서명
- 2. 대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 ② 결석 사유
  - ③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3. 위임장과 결석계는 생학대회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4. 대의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5. 대의원이 위임한 경우에도 회의록에는 위임자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 23조 (의장)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 1.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이 하도록 한다.
- 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부재 시에는 생명공학대학 부학생회장이 하도록 한다.
- 3.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부재 시에는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선한 일인이 하도록 한다.

## 24조 (업무 및 권한)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아래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에서 자동 위임 및 의결을 통해 위임된 업무.
- 2.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 투표 실시 시 과반수의 미참석으로 부결된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
- 3.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칙 및 생명공학대학 동아리회칙의 개정. (단, 학생회장 공표 후,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정회원의 1/10 이상의 이의 제기가 있을 시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 또는 학생 총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다.)
- 4. 생명공학대학 단과대 동아리의 심의 및 인준. (세부 내용은 동아리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기타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6.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에 대한 안건 상정.

25조 (소집 및 개회)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 개회한다.

1.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회의는 생명공학대학 학생대표자 중 1/3 이상의 서면 발의 또는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의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회의는 회의 소집 3일 전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소집할 수 있다.
3.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회의는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25조의2 (회의의 공개)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학대회의 의결 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때에도 30일 이내에 공개한다.

26조 (안건의 의결)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대표자 2/3 참석에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7조 (안건의 위임)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위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의 안건 중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
2.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로 안건의 자동 또는 임의적 위임은 할 수 없다.

## 5장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

28조 (지위)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상시의 대의 의결기관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와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의 위임기관임과 동시에 심의. 의결기관이다.

29조 (운영위원회 구성)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대표와 전공 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2. 생명공학대학 내 전공 학생회장단(전공별 1표를 원칙으로 한다)

30조 (의장)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이 하도록 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부재 시에는 생명공학대학 부학생회장이 하도록 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부재 시에는 호선을 통하여 운영위원 중 1인이 하도록 한다.

31조 (업무 및 권한)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 및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위임된 안건. (단, 이 경우 실무적인 내용만을 말한다. 의결할 수 없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일상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 및 학생 대표자 회의 안건 상정.
- 생명공학대학 학부, 과 학생회의 예산 감사.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논의 및 의결.

32조 (소집 및 개회)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 개회한다.

- 주 1회 정기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중에는 운영위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 임시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 개최 시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학생회장단의 소집으로 소집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33조 (안건의 의결)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2/3 이상 참석과 참석단위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 의결할 수 있다.

## 6장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

34조 (지위)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생명공학대학 학생 총 투표의 투표관리위원장, 투표관리부위원장이 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대외적으로 생명공학대학을 대표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35조 (의무)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업무 개시일 이후 생명공학대학 학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생명공학대학 학우의 의견의 수렴 및 표출을 할 의무를 가진다.

36조 (학생회장단의 구성)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정회원으로 성균관대학교에 4학기 이상 등록한자로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 탄핵 발의 시 당사자의 업무는 정지된다.(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될 경우, 일상 사업 등의 사업은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4. 선거의 일정은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5. 선거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선거원칙에 따른다.

- 37조 (업무 및 권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자유로운 학술 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진행에 있어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대표로서 생명공학대학 업무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발의 시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 또는 생명공학대학 대표자 회의 또는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생명공학대학 중앙집행국 회의 등 적절한 회의기구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내 집행국(부)장과 산하기구의장을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의 인준(2/3 참석에 2/3 찬성)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5.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내 집행국(부)장과 산하기구 장을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생명공학대학 내 집행국(부)원과 산하기구의 구성원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6.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예산의 집행 내용을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생명공학대학 부학생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생명공학대학 회장단 부재 시는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단,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생명공학대학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8.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차기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에게 제37조의2에 의해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37조의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지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차기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 당선 공고일 이후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로 전환한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은 당선 공고일 이후 차기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 및 선거운동본부를 그 즉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인수위원에 해당하는 차기 생명공학대학 학생회가 부재하는 경우,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3.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수인계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 ①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의 주요 사업 인계
  - ②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부의 조직·기능 및 예·결산 현황의 파악
  - ③ 기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업무 인수에 필요한 사항
4.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장은 전임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3항의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해산한다.

## 7장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

38조 (구성)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장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이 추천하고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2/3의 참석에 2/3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원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임명으로 구성한다.
3. 집행국(부)의 구성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의 판단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할 수 있다.
4.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장 및 집행국(부)원은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2/3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39조 (업무 및 권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과 함께 생명공학대학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은 분담된 업무에 대해 책임 있게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열 회의를 둘 수 있다.
4.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부)은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청구할 수 있다.

40조 (회의) 생명공학대학 중앙집행국(부)회의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 및 집행국(부)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 8장 비상대책위원회

41조 (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된다.

1.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이 궐위되었을 때
  3.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42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

국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을 구성한다.

⑤ 임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은 각 전공 학생회에서 1인씩 추천하여 구성하며,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3조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생명공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4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생명공학대학 학생총회,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 임시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집행국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45조 (기타)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생명공학대학 학생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 9장 학생회비 재정운용

### 46조 (목적)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학생회비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7조 (적용범위)

본 회칙에 명시된 내용은 생명공학대학 학생회비와 각 과 학생회비의 재정운용에 적용된다.

### 4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49조 (학생회비의 배분)

생명공학대학 학생회비를 각 학과 전공회비에 배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결정한다.

### 50조 (결산)

- ① 결산은 학생회 재정에 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매 학기마다 생명공학대학 집행국에서 결산안을 작성하여 생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생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③ 최종 결산안은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재해야 한다.

### 51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생학대회에서 정한다.

## 부 칙

1조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칙의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의 발의 또는 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정회원 1/10의 서면 발의로 발의 될 수 있다.
2. 생명공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안건 변경을 한다. 단, 대의원의 1/2과 정회원 1/10에 의해 발의된 경우에는 안건을 변경할 수 없다.
3. 생명공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조 본 회칙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5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3조 본 회칙은 2015년 3월 이후 만들어질 양 캠퍼스 통합회칙이 발효되어, 단과대 학생회칙의 세부 내용 수정이 필요해질 때까지 계속 유효하며, 양 캠퍼스 통합회칙이 발효되면 그에 따라 재수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조 회칙의 수정이 있을 시, 회칙수정을 한 생명공학대학학생회, 생명공학대학학생운영위원회 이름과 수정 일자를 명시한다.